

<http://dx.doi.org/10.17703/JCCT.2022.8.6.733>

JCCT 2022-11-90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변화

### Change in th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of Enterprise regarding Enforcement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조서연\*, 정명진\*\*, 한유림\*, 장재우\*

Seoyeon Cho\*, Myeongjin Jeong\*\*, Yurim Han\*, Jaewoo Chang\*

**요약** 안전·보건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에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안전보건예산이 대부분 증가하였으며, 안전보건조직 운영과 안전보건업무가 대부분 강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이것이 근로자의 안전과 중대재해 감소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이며 안전·보건관리자가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의 교육 여부와 안전보건에 관한 긍정적인 변화 사이의 교차분석을 통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적극적인 지원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교육의 강화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관리자

**Abstract** A survey was conducted on safety and health managers to analyze what change have occurred in the safety health management system of companies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most of the safety and health budgets increased, and most of the safety and health organization operations and safety and health tasks were strengthened. However,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see if this has a practical effect on worker safety and reduction of serious accidents, and realistic measures are needed to allow safety and health managers to focus on practical helpful tasks rather than formal ones.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active support from business owners or management managers and strengthening education on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were needed through cross-analysis between the education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and positive change in safety and health.

**Key words** :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Safety·Health Manager

## 1. 서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기업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위험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의무를 위반해 사망·중대재해에 이르게 한때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 처분하고 해당 법인에 벌금을 부과

\*준회원,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학사과정 (제1저자)

\*\*정회원,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2년 9월 27일, 수정완료일: 2022년 10월 25일

게재확정일: 2022년 11월 1일

Received: September 27, 2022 / Revised: October 25, 2022

Accepted: November 1, 2022

\*\*Corresponding Author: [jmj123@eulji.ac.kr](mailto:jmj123@eulji.ac.kr)

Dept. of Environment Health and Safety, Eulji Univ, Korea

하는 등 처벌 수위를 명시하고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법인을 법규 의무 준수 대상으로 하고 사업주의 경우 안전보건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을 하는데 반해,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인과 별도로 사업주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데서 우선 차이가 있다 [2]. 하지만 이 법은 기업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3].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안전보건관리체계 변화와 실제 효과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는 안전·보건관리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안전보건관리체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떤 식으로 정착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현직 안전·보건관리자 1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내용은 일반 사항 6문항, 안전보건예산에 관한 사항 2문항, 안전보건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6문항, 안전보건업무에 관한 사항 7문항으로 구성되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중 일부를 활용하였다. 연구에 수집된 자료처리는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유의수준을 검증하였다. 각 연구 도구의 신뢰도 산출은 Cronbach's  $\alpha$ 의 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연구대상자 일반적 특성

안전·보건관리자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는 표1과 같다.

연령의 경우 30대(38.1%)와 40대(33.6%)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안전관리자는 76.1%, 보건관리자는 23.9%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근로 사업장의 경우 건설업(31%)이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은 제조업(30.1%)이었다.

현직경력 의 경우 10년 이상(24.8%)이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은 1년 이상 3년 미만(23%)이었다.

표 1. 안전·보건관리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Personal characteristics of safety and health manager

일반적 특성		비율(%)
연령	20대	16.8
	30대	38.1
	40대	33.6
	50대	8.8
	60대	2.7
	전체	100.0
직무 분야	안전관리자	76.1
	보건관리자	23.9
	전체	100
사업장의 종류	건설업	31.0
	제조업	30.1
	전기·가스·수도업	9.7
	운수·창고·통신업	9.7
	금융보험업	1.8
	기타의 사업	17.7
	전체	100.0
현직경력	1년 미만	15.0
	1년 이상 3년 미만	23.0
	3년 이상 5년 미만	15.9
	5년 이상 10년 미만	21.2
	10년 이상	24.8
	전체	100.0

### 2. 안전보건예산 변화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련 인력의 변화에 대한 조사결과는 그림 1과 같다. 증가하였는 경우가 68명(60.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변화가 없는 경우가 37명(32.7%), 감소하였는 경우가 8명(7.1%)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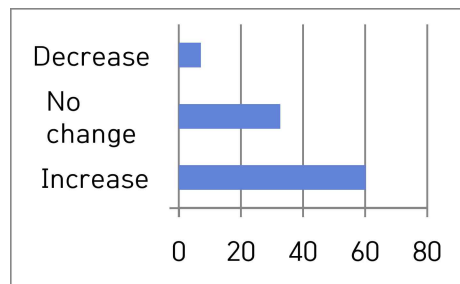


그림 1. 안전보건 관련 인력 변화

Figure 1. Change in health and safety staffing

사업장의 종류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에 필요한 법적 외 안전보건관리비의 변화 사이의 연관성을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표 2과 같다. 자유도(df)는 10, 카이제곱 값( $\chi^2$ )은 22.761이며 유의확률(p값)은 0.012으로 두 변수의 연관성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사업장은 건설업으로 35명(31%)이었고 그들 중 10명(28.6%)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은 제조업으로 34명(30.1%)이었고 그들 중 20명(58.8%)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의 경우 응답자들의 절반 이상이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에 필요한 법적 외 안전보건관리비가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건설업의 경우 응답자들의 71.4%가 변화가 없거나 감소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건설업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나와 있는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되기 때문에[4] 법적 외 안전보건관리비의 증액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표 2. 사업장의 종류에 따른 법적 외 안전보건관리비의 변화 교차 분석

Table 2. Cross-analysis of the change in non-legal cost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according to the type of workplace

사업장의 종류	빈도	법적 외 안전보건관리비			
		감소하였다.	변화가 없다.	증가하였다.	전체
건설업	N	2	23	10	35
	%	5.7	65.7	28.6	100
제조업	N	2	12	20	34
	%	5.9	35.3	58.8	100
전기·가스·수도업	N	0	4	7	11
	%	0	36.4	63.6	100
운수·창고·통신업	N	0	3	8	11
	%	0	27.3	72.7	100
금융보험업	N	1	0	1	2
	%	50.0	0	50.0	100
기타의사업	N	0	9	11	20
	%	0.0	45.0	55.0	100
전체	N	5	51	57	113
	%	4.4	45.1	50.4	100

df: 10  $\chi^2$ : 22.761 p<0.012

### 3. 안전보건조직 운영 변화

안전보건전담조직의 변화에 대한 조사결과는 그림 2와 같다. 강화되었다의 경우가 76명(67.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변화가 없다는 경우가 34명(30.1%), 약화되었다의 경우가 3명(2.7%)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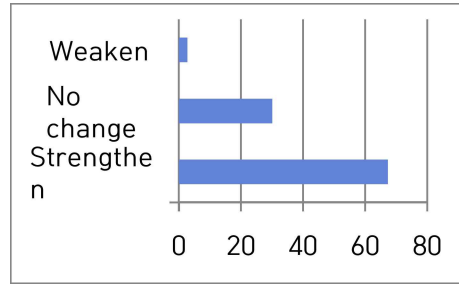


그림 2. 안전보건전담조직 변화  
 Figure 2. Change in safety and health organization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규정의 강화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는 그림 3과 같다. 강화되었다의 경우가 80명(70.8%)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변화가 없다는 경우가 23명(20.4%), 약화되었다의 경우가 10명(8.8%)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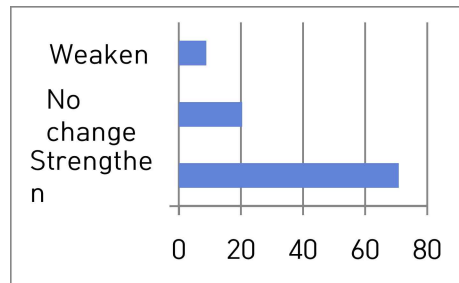


그림 3. 안전보건관리규정 변화  
 Figure 3. Change in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regulations

대표나 이사회 또는 경영진의 관심 변화에 대한 조사결과는 그림 4와 같다. 증가하였다는 경우가 82명(72.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변화가 없다는 경우가 26명(23%), 감소하였다는 경우가 5명(4.4%)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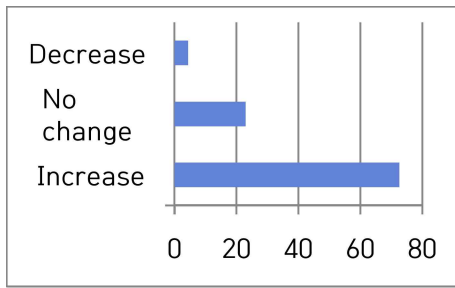


그림 4. 대표나 이사회 또는 경영진의 관심 변화  
Figure 4. Change in the interest of the representative or board of directors or management

#### 4. 안전보건업무 변화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적 외 안전교육 시행의 변화에 대한 조사결과는 그림 5와 같다. 증가하였다는 경우가 63명(55.8%)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변화가 없다는 경우가 45명(39.8%), 감소하였다는 경우가 5명(4.4%)으로 조사되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경영진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건교육 참여율 변화에 대한 조사결과는 그림 6과 같다. 증가하였다는 경우가 66명(58.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변화가 없다는 경우가 41명(36.3%), 감소하였다는 경우가 6명(5.3%)으로 조사되었다.

사업장 순회 점검, 지도 및 조치 빈도의 변화에 대한 조사결과는 그림 7과 같다. 증가하였다는 경우가 78명(6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변화가 없다는 경우가 31명(27.4%), 감소하였다는 경우가 4명(3.5%)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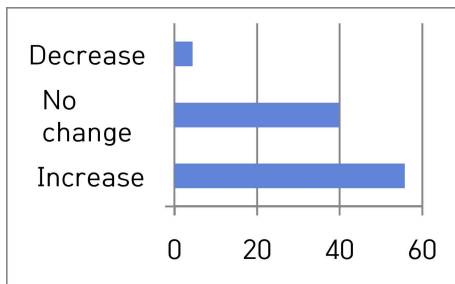


그림 5.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대상의 법적 외 안전보건교육 시행 변화  
Figure 5. Change in the implementation of non-legal safety and health education for workers and supervisors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량 또는 강도의 변화에 대한 조사결과는 그림 8과 같다. 증가하였다는 경우가 97명(85.8%)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변화가 없다는 경우가 12명(10.6%), 감소하였다는 경우가 4명(3.5%)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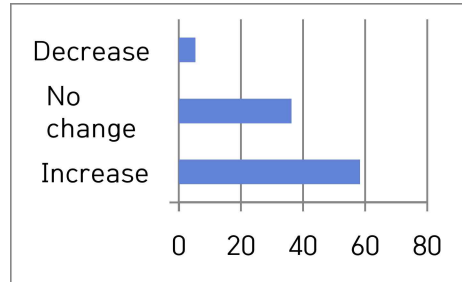


그림 6.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경영진 대상의 안전보건교육 참여율 변화  
Figure 6. Change in the participation rate of safety and health managers and manag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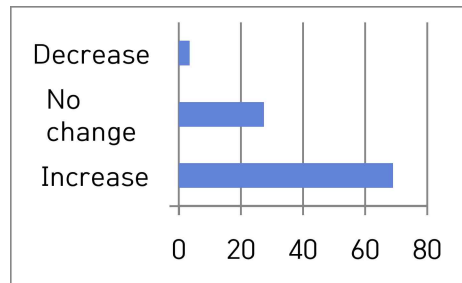


그림 7.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빈도의 변화  
Figure 7. Change in the frequency of en route inspection of workplace, guidance, and ac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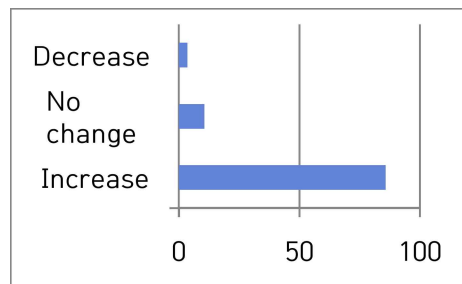


그림 8.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량, 강도 변화  
Figure 8. Change in the workload and work intensity of safety and health managers

5.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여부 교차분석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는 그림 9와 같다. 예의 경우가 75명(66.4%)이었고 아니요의 경우가 38명(33.6%)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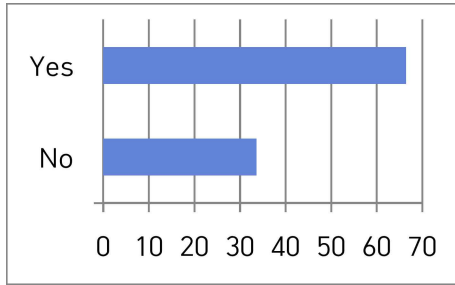


그림 9.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여부  
 Figure 9. Education about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회사의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여부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 관련 인력의 변화 사이의 연관성을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자유도(df)는 2, 카이제곱 값( $\chi^2$ )은 14.102이며 유의확률(p값)은 0.001으로 두 변수의 연관성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들 중 75명(66.4%)이었고 그들 중 54명(72.0%)이 안전·보건 관련 인력이 증가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들 중 38명(33.6%)이었고 그들 중 14명(36.8%)이 안전·보건 관련 인력이 증가했다고 응답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사업장일수록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 관련 인력이 증가했다고 판단된다.

표 3. 교육 여부에 따른 안전·보건 관련 인력의 변화 교차분석  
 Table 3. Cross-analysis of change in safety and health staffing according to education

교육 여부	빈도	안전·보건 관련 인력의 변화			
		감소 하였다.	변화가 없다.	증가 하였다.	전체
예	N	5	16	54	75
	%	6.7	21.3	72.0	100
아니요	N	3	21	14	38
	%	7.9	55.3	36.8	100
전체	N	8	37	68	113
	%	7.1	32.7	60.2	100

df: 2  $\chi^2$ : 14.102 p<.001

회사의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여부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법적 외 안전보건관리비 변화 사이의 연관성을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자유도(df)는 2, 카이제곱 값( $\chi^2$ )은 13.578이며 유의확률(p값)은 0.001으로 두 변수의 연관성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들 중 75명(66.4%)이었고 그들 중 47명(62.7%)이 법적 외 안전보건관리비가 증가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들 중 38명(33.6%)이었고 그들 중 10명(26.3%)이 법적 외 안전보건관리비가 증가했다고 응답하였다.

회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그룹과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그룹 각각에서 증가했다고 답변하는 비율이 두 배 이상 차이는 것을 보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사업장일수록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법적 외 안전보건관리비가 증가했다고 판단된다.

표 4. 교육 여부에 따른 법적 외 안전보건관리비의 변화 교차분석  
 Table 4. Cross-analysis of change in non-legal cost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according to education

교육 여부	빈도	법적 외 안전보건관리비의 변화			
		감소 하였다.	변화가 없다.	증가 하였다.	전체
예	N	2	26	47	75
	%	2.7	34.7	62.7	100
아니요	N	3	25	10	38
	%	7.9	65.8	26.3	100
전체	N	5	51	57	113
	%	4.4	45.1	50.4	100

df: 2  $\chi^2$ : 13.578 p <.001

회사의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여부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경영진 대상의 안전보건교육 참여율의 변화 사이의 연관성을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표 5과 같다. 자유도(df)는 2, 카이제곱 값( $\chi^2$ )은 14.606이며 유의확률(p값)은 0.001으로 두 변수의 연관성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들 중 75명(66.4%)이었고 그들 중 52명(69.3%)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들 중 38명(33.6%)이었고 그들 중 14명(36.8%)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교육을 시킨 사업장일수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경영진 대상의 안전보건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고 판단된다.

표 5. 교육 여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경영진 대상의 안전보건교육 참여율의 변화 교차분석

Table 5. Cross-analysis of change in the participation rate of safety and health education for safety and health managers and management according to education

교육 여부	빈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경영진 대상의 안전보건교육 참여율의 변화			
		감소하였다.	변화가 없다.	증가하였다.	전체
예	N	5	18	52	75
	%	6.7	24	69.3	100
아니요	N	1	23	14	38
	%	2.6	60.5	36.8	100
전체	N	6	41	66	113
	%	5.3	36.3	58.4	100

df: 2  $\chi^2$ : 14.606 p<001

회사의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여부와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감독의 강화여부 사이의 연관성을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자유도(df)는 2, 카이제곱 값( $\chi^2$ )은 6.275이며 유의확률(p값)은 0.043으로 두 변수의 연관성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들 중 75명(66.4%)이었고 그들 중 50명(66.7%)이 안전보건관리감독이 이전에 비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들 중 38명(33.6%)이었고 그들 중 16명(42.1%)이 안전보건관리감독이 이전에 비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6. 교육 여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감독의 강화 여부 교차분석  
Table 6. Cross-analysis of consolidation of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upervision according to education

교육 여부	빈도	안전보건관리감독의 강화 여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예	N	6	19	50
	%	8.0	25.3	66.7
아니요	N	5	17	16
	%	13.2	44.7	42.1
전체	N	11	36	66
	%	9.7	31.9	58.4

df: 2  $\chi^2$ : 6.275 p<0.043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교육을 시킨 사업장일수록 안전보건관리감독이 강화되었다고 판단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이해도에 대한 조사결과는 그림 10과 같다. 그렇다의 경우가 57명(50.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보통이다의 경우가 30명(26.5%), 그렇지 않다는 경우가 26명(23.0%)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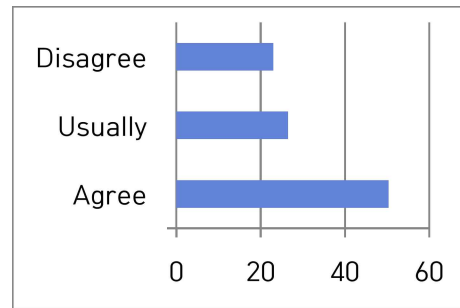


그림 10. 중대재해처벌법 이해도

Figure 10. Understanding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회사의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여부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도 사이의 연관성을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자유도(df)는 2, 카이제곱 값( $\chi^2$ )은 16.423이며 유의확률(p값)은 0.001미만으로 두 변수의 연관성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교육 여부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도 교차분석  
Table 7. Cross-analysis of understanding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according to education

교육 여부	빈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예	N	19	11	45
	%	25.3	14.7	60.0
아니요	N	7	19	12
	%	18.4	50.0	31.6
전체	N	26	30	57
	%	23.0	26.5	50.4

df : 2  $\chi^2$ : 16.423 p<.001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들 중 75명(66.4%)이었고 그들 중 45명(60.0%)이 잘 이해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들 중 38명(33.6%)이었고 그들 중 12명(31.6%)이 잘 이해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교육을 받은 안전·보건관리자와 받지 않은 안전·보건관리자의 잘 이해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2배 정도 차이가 났으며 교육을 받은 안전보건관리자일수록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 IV. 결 론

본 연구는 총 113명의 안전·보건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문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변화를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안전보건예산에 관한 사항을 보면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보건 관련 인력과 안전보건관리비 모두 증가한 경향을 보였다. 건설업의 경우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가 전체의 절반을 넘을 만큼[5] 중대재해에 가장 취약한 업종이지만 설문 결과 법적 외 안전보건관리비가 증가하였다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적었다. 그렇기 때문에 계상기준의 변경을 통해 법적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늘리는 등의 근본적인 제도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둘째, 안전보건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면 대부분 강화 또는 증가한 경향을 보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인 만큼 확실히 대표나 이사회 또는 경영진 관심이 증가했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안전보건전담조직과 안전보건관리규정 또한 강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것이 근로자의 안전과 중대재해 감소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셋째, 안전보건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면 대부분 증가한 경향을 보였다. 특히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량과 강도가 몹시 증가하였는데 설문의 자유 문항을 통해 형식적인 서류 및 보고 업무 때문에 업무량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안전과 중대재해 감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넷째,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여부와 여러 문항을 교차 분석한 결과, 교육을 실시한 사업장과 그렇지 않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답변에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및 경영진의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도와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여부 사이에는 유의한 연관성이 있었는데 이는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이 교육을 실시한 사업장에 비해 재해 예방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주의 의지부족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가져오며 결과적으로 산업재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만큼[6]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안전·보건관리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잘 이해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절반밖에 되지 않았다.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가 중대재해처벌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다소 낮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교육의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

#### References

- [1]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Enforcement Decree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2022.
- [2] Parkmoongak current events editorial department, "2022 The updated event of essential knowledge 216th Album," p.56, July 2022.
- [3]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Briefing data on the reduction of industrial death accident from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2021.
- [4]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Appropriation and Use Standards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Expense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2022.
- [5]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21 current state of industrial accidents," 2022.
- [6] Y. G. Yoon, Y. R. Ahn, and T. K. Oh, "Reinforcement Plan of safety and health technical support project for small-sized businesses by experts' survey,"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8, No. 5, pp.631-639, September, 2022.

※ 이 연구는 2022년 을지대학교 대학혁신지원 사업 지원을 받아 진행한 연구임.